

1.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

상위법인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이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「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」을 「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으로 개정하는 등 제명, 본문, 별표, 별지상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단순자구 수정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특기할 사항 없음

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조의2(자원조사)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제2조에 따른 별표의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실시하되,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2조(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)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은행, 조폐, 담배 및 주류의 제조·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중에서 지정할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별표와 같다.

제3조(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등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

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비축명령)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은행, 조폐, 담배 및 주류의 제조·판매 등에 필요한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.

제5조(비축물자의 실태보고)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]

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(제2조 관련)

구 분	범 위
1. 은행기관	가.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 나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2. 조폐기관	「한국조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조폐공사
3. 담배 및 주류 업체 등	가.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담배제조업체 및 담배판매업체 나.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
4. 그 밖의 기관 및 업체	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및 업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업체로서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및 업체

[별지 제1호서식]

제 호			
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			
① 업체명			
② 대표자		③ 사업자등록번호	
④ 소재지			
⑤ 임 무			
⑥ 지정사유			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.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인			

———— 자르는 선(간인) ————

제 호			
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			
⑦ 업 체 명		⑧ 대표자	
⑨ 소 재 지			
⑩ 수 령 자	(서명 또는 인)	⑪ 업체의 장과의 관계	
⑫ 수 령 일	. . .	⑬ 수령장소	
※ 주의사항 1.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하여야 합니다. 2. 문의사항이나 그 밖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

[별지 제2호서식]

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

① 지정 번호	② 지정 연월일	③ 업체명	④ 대표자 성명	⑤ 소재지	⑥ 임무	⑦ 비고

■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

비 축 명 령 서

업체명:				소재지:		
대표자 성명:						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축할 것을 명합니다.						
품목	규격 또는 구조	단위	수량	비축 장소	비축 기간	비고
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직인						

..... 자 르 간
 는 선 인

제 호

비 축 명 령 서 수 령 증

다음과 같이 비축명령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.		
수령인	업체명	대표자
	소재지	업체의 장과의 관계
	수령 일자	수령 장소

[별지 제4호서식]

비축물자 실태보고서

1. 비축물자 총 보유 현황

① 종류	② 품명	③ 규격	④ 단위	전년도 말 보유		해당 연도 계획		해당 연도 실적		총 보유		다음 연도 계획	
				⑤ 수량	⑥ 금액	⑦ 수량	⑧ 금액	⑨ 수량	⑩ 금액	⑪ 수량	⑫ 금액	⑬ 수량	⑭ 금액

2. 비축물자 보관장소별 현황

① 보관장소	② 종류	③ 품명	④ 규격	⑤ 단위	⑥ 수량	⑦ 소계

3. 비축물자 보관·저장시설 현황

① 시설명	시설규모						⑧ 소재지
	② 대지(m ²)	③ 건평(m ²)	④ 구조물	⑤ 부대시설	⑥ 시공시간	⑦ 시설비	